http://dx.doi.org/10.14400/JDC.2014.12.6.1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Argumen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focused on the reforming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Hong, Sook-Yeong
Dept. of Media and Image, Hansei University

요 약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중재

Abstract With the drastic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almost eternally saving digital information, cases for giving sufferings to a person who deserves to enjoy privacy have increased. So I study the right to be forgotten focusing on the collision between that 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I also stud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ts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that right. That right can be protected mainly by the self-decision making right under the Article 10, and secondly the privacy right under the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Press Arbitration Law can be applied to protect the right to be forgotten, but that Law needs the revision of time-limit clause for complain, protection clause for the right to ask to delete factual past article, and the clause of staleness doctrine for the consent of giving personal information.

Key Words :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expression,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ress arbitration

1.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저장 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구글은 현재 15GB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얼마 전 100GB의 월 사용료를

Received 9 March 2014, Revised 14 April 2014
Accepted 20 June 2014
Author: Sook-Yeong Hong(Dept. of Media & Image)
Email: marylou@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99 달러에서 1.99 달러로, 1TB 드라이브 요금을 월 49.99 달러에서 9.99 달러로 크게 낮춰 가격 경쟁 체제에 돌입하였다[1]. 이처럼 정보의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억하는 기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여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pictopia.com이 공개한 12,000장의 캘리포니아 해안 사진 가운데 자신의 말리부 자택이 상세하게 노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며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녀는 해당 항공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해당 사이트를 찾는 역효과가 일어났다[2]. 미국에서는 25세의 여성이 대학 시절 인터넷 블로그에 해적 모자를 쓰고 컵을 든 채 “술취한 해적”이라는 캡션을 단 사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교원 채용을 거부당하기도 하였으며[3], 미스 시애틀로 선발된 여성이 예전에 트위터에 “나는 시애틀의 춥고 비 많은 날씨나 성가시게 하는 시애틀 사람들이 싫다. 애리조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가 시애틀의 네티즌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4].

아르헨티나에서는 팝스타 Virginia Da Cunha가 어린 시절 관능적인 자세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Google과 Yahoo를 상대로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단독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회사들이 그 사진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임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2011년 아르헨티나 법원에는 이러한 분야의 소송이 130여건이 넘었다고 한다[5].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지하철 ‘개똥녀 사건’,이나 ‘패륜녀 사건[6]‘ 등 오래 전에 인터넷에 업로드된 개인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검색되어 유통되면서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 신문사들이 내부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과거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기사 중에는 절도 형사사건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까지 그대로 담고 있는 것도 있다[7].

뉴스가 된 시점에서는 뉴스가치로 높고 기사작성의 원칙을 지킨 기사였으나 시간이 지나 인터넷으로 기사가 유통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군에서 자살한 아들과 관련한 기사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우니 삭제해 달라거나 경쟁 회사에게 마케팅적으로 악용되는 오래전 자신의 회사 관련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8]. 심지어 로그인 절차 없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무작위로 특정일인 1963년 5월 16일 한 신문의 사회면을 조회하면, 단순 식중독 사고 기사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전원의 정보는 물론 가족이 세를 들어 사는 집주인의 실명과 나이, 주소와 거주 형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8]. 이제 디지털화된 정보에 의해 완벽한 기억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삭제와 망각의 축복은 시대적 운명이 된 것이다[9].

이처럼 삭제되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09년 11월 디지털 경제부 코슈스코-모리제 장관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헌장을 만들겠다며 이슈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10년 10월 디지털기업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10]. 스페인에서는 구글에서 쉽게 집주소가 검색되는 폭력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한 90명의 시민들이 집단으로 구글에 삭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독일에서는 1990년 유명 배우를 살해한 볼프강 베를레와 반프레드 로이버가 Wikipedia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1].

개인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덜란드 출신의 운영자들이 개설한 ‘웹2.0 자살기계“(suicidemachine.org)는 사회관계망 사이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두 지워버리고 계정 자체를 없애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본어로 ’할복‘을 뜻하는 ’세푸쿠‘(seppukoo.com)도 온라인 계정의 삭제를 도와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12]. 미국의 경우 www.lifeinsured.com 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진은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300달러를 내고 사후에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유언형태로 남기면, 그 회원의 사망신고 접수 후 그의 인터넷상의 모든 흔적을 지워주겠다면서 디지털 장의사임을 표방하고 있다[12].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이러한 현실적 문제

를 직시하고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의 문제점 가운데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잊혀질 권리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여 이 두 가지 권리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디지털 시대,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개인의 잊혀질 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충돌되는가?
(3) '잊혀질 권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잊혀질 권리'가 대두된 배경에 대해 살펴 본 뒤 문헌 검토를 통해 '잊혀질 권리'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논의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언론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하여 개인의 기사 삭제 요청을 비롯한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잊혀질 권리를 언론중재절차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은 무엇이고,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3. 잊혀질 권리의 정의 및 인정근거

3.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010년 6월 유럽연합 '정보사회와 미디어국장'(Commissioner for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이던 Viviane Redin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밝히면서 '잊혀질 권리보호'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때부터 '잊혀질 권리'는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13].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은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인터넷 상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보다 무게를 두어 잊혀질 권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13]. 이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SNS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할 경우 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5].

2010년 EU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은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가 수집된 목적으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그 개인이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였거나, 동의된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정보를 완전히 제거할 권리'라고 정의하였다[14].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자기 관련 정보의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15]. 또한, 전과기록 등 일정한 공적 데이터의 완벽한 삭제에 관한 망각될 권리(oblivion, *droit* à *l'oubli*)와, 자동화된 처리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데이터의 제거에 관한 삭제될 권리(right to erasure)를 구별한 후 그 두 권리를 통합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를 파악하기도 한다[14]. 그밖에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 등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16].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17].

국내에서는 근래 들어 법학과 언론학 분야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황성기[18]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타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익형량에 있어

서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 간의 조화를 위한 방향성 및 추상적인 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재진·구본권[7]은 과거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사 수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피해를 유형화하고 해결방안으로 중재기구를 통해 조정과 프라이버시 개념에 잊혀질 권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은별·최광희·이재일[19]은 EU와 한국에 구현된 잊혀질 권리의 개념적 차이점에 대해 비교분석하면서 국내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잊혀질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정책이나 언론정책을 수행하거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잊혀질 권리의 당연한 속성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오래된 과거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에 올린 개인정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우연히 저장하게 되는 개인관련정보 및 단편적인 개인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집한 융합분석 결과정보[20] 등에 관하여서도 [17]잊혀질 권리의 보호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구체적인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이 정의하는 내용으로 잊혀질 권리의 보호대상이 축소되는 것일 뿐이다.

3.2 '잊혀질 권리'의 인정근거

잊혀질 권리의 인정근거에 관하여는, 현대 정보기술 사회에서 헌법 제10조에서 연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하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1]. 다른 한편으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헌법 명문상으로 뚜렷한 인정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22], 이를 프라이버시권의 적극적인 형태, 즉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타인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9]. 그러나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 임의로 기본권을 창설하는 해석론은 헌법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론이 될 수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권은, 사법상으로는 미국에서 사진촬영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황색 저널리즘에 대항하여[23], 혼자 있게 내 버려 둘 권리(right to be let alone)[14]가 저작권 침해나 계약위반 내지 계약상 신뢰위반 법리, 또는 거래비밀 침해 법리 등으로 보호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임에 착안하여 보통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거나 금지명령을 발하는 근거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24].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6]. 그러나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므로 공개된 진실한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에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다[21]. 따라서 미국식의 견해를 택하여 잊혀질 권리를 프라이버시의 한 내용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개념을 세워놓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잊혀질 권리는 이러한 권리의 하위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정보의 유통에 관련된 정보 배포, 그 열람·삭제·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격상시킬 수 있다. 보충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까지 포섭하는 내용으로 의미가 변화된[21] 우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조항에서 잊혀질 권리의 인정근거를 끌어낼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 제10조를 위주로 하고, 제17조를 보충적으로 하여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25],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는 서로 비교하거나 형량 할 대상이 될 동등한 순위의 기본권이 된다.

4. 잊혀질 권리의 법적 보장

4.1 입법 정책적 측면

잊혀질 권리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보장하여야 실효성을 지니게 된다. 잊혀질 권리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개인정보 보호 및 통제권의 필요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 표현의 자유 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 사업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반대 근거로 내세운다[16].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데이터 저장 용량이 확대되면서 서구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한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10년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일정 기간이 경과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었으며[14],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26]. EU 집행위원회는 2012. 1. 25.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 "데이터보호 규칙"(Data Protection Rules) 개정안을 확정·발표한 상태이며[16], 2014년 4월에 개최될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7]. 이것은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사적인 삶, 가족, 가정,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유럽인권조약 제8조나[17], 유럽연합 기본권 장전 제7조, 특히 명시적으로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한 위 장전 제8조 등에[28]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인다[29]. 위 안 제17조에 따르면 수집 또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관기간이 도과된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른 이유로 위 규칙안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보주체는 관리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더 이상의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14]. 한편. 미국의 Ed Markey 의원은 15세 이하 청소년의 인터넷 활동 데이터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추적 금지법안(Do Not Track Kids Act)을 제안하기도 하였다[14].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2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일정 범위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2]. 따라서 현행 실정 법 이외에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입법 만능주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헌법상의 사적자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2 현행 실정법상 보장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할 법률' 제30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3항),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정정 또는 정정 불가 사유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제5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취한 후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요청을 거절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6].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면 사업자가 파기 또는 분리저장·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19].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잊혀질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같은 해 9. 30.부터 시행됨) 제36조와 제37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에 의해 '정정·삭제 요구권'(제36조), '처리정지 등 요구권'(제37조)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입법적으로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16].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보호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등이 보관하는 정보로 온라인상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정보에 한정된다. 자연인(정보대상자)의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보관하는 정보, 온라인상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자발적으로 게시한 개인정보(글, 사진 포함), 제3자 등에 의해 복사, 복제, 링크된 개인정보 등까지 망라하여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보호 규칙(안)" (Data-Protection Rules)과 비교할 때[19] 그 보호대상인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전

부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16]. 이때 예컨대 정보주체가 인터넷에 자신의 정보를 올리면서 제3자의 공유를 허용하였고, 제3자가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링크하거나, 복사하여 붙여 넣거나, 기타 방법으로 원용하여 공유한 경우(이른바 퍼나르기)에도 해당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6].

EU 집행위원회의 "데이터보호 규칙(안)" 역시 개인정보처리 사업자의 의무로, 직접 보유한 개인정보를 곧바로 삭제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복사, 복제 또는 링크 삭제를 요청 받으면 해당 정보를 처리·취급하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3자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가 공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19]. 그러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러한 해석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이트상 개인정보만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19]. 개인정보주체의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위 법률 제39조, 제73조 제2, 3호).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족하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근본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1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현실을 문제가 된다. 해당 정보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5조의2는 사망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만든 사이버상의 자아를 유기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로 인정할 수는 없다[2].

민법 제751조, 제764조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 또는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법 제30조에 의한 재산권이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게시물의 삭제 등을 명할 수도 있다. 한편 민법이나 언론중재법에 의한 반론권, 정정보도 등의 언론피해 구제절차로는 잊혀질 권리 침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7]. 언론중재법 제26조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의 청구에 대해 그 청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원인을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 제751조나 제764조에 의한 청구로 구성하면, 잊혀질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위해 법원이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정정이나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의 판례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5.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5.1 실체법적인 해결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주체가 정보의 정정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균형있게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언론중재와 관련하여 '묵은 기사'로 인한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과거의 기사에 대한 삭제·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와 언론사의 이익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법익형량을 통해 어떤 기본권을 우선할 것일지 순위를 정한다. 이에 따르면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기본권에 대해 어떻게 조정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사회적인 여러 이익을 비교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12]. 그러나 법익형량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국회나 행정기관, 법원 등에 의한 자의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 법익형량 기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해 놓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사안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8]. 언론의 묵은 기사도 시대를 기록한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므로 관련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기

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가능한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것이다[7].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규칙(Data Protection Rules) 개정안 제17조(3)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28].

반면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는 근본적으로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떠한 기본권이 더 중요한지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마다 법익 형량을 통해서 따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언론사가 기록적 형태의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통되는 과거 기사는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정해 언론의 보도매체로서의 기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7].

언론중재법 제3조 제2항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언론의 자유 의사로 정보원에 접근하여 취재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자유권과 개인의 정보기본권 사이의 동화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언론의 자유권과 대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이지, 정보기본권이 언론의 자유권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기사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잊혀질 권리 사이에 어떤 권리를 우선시할 것인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지(highly offensive to a reasonable) [23]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보의 가치는 정치 · 경제 · 사회 · 기술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 때는 공중에게 알려진 정보로서 공개될 공적 이익이 있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현재는 프라이버시 이익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 지"(이른바 '실무적인 모호함' practical obscurity)를[14]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에서 작성된 기사가 취재·보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개인적인 잊혀질 권리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가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9].언론의 묵은 기사도 시대를 기록한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현재 시점에서 과거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0]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언론'이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포함하며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위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아가 여기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기사에서 언급된 개인정보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라면 표현의 자유보다는 잊혀질 권리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신문사가 실명을 게재한 기사를 작성하여 출판하거나 방송국이 정규방송 시간에 범죄사실과 함께 그의 사진과 실명을 보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6]. 그러나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기사의 경우 공익성과 공공의 알권리가 우선되어 언론의 자유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 사안마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보다 잊혀질 권리의 보장이 우월하다고 여기면 해당 사안에 대해 반론,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반론,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

고 있고, 언론중재법 제16조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도 분명하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는 진실한 개인관련 정보에 관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므로[31]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면 정정과 삭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5.2 절차법적 해결과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잊혀질 권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이전 단계인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나 같은 법 제64조에 의한 안전행정부장관과 같은 행정부 내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이나[32]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구제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집단분쟁조정제도(위 법률 제49조) 및 단체소송제도(위 법률 제51조)를 도입하고, 위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면책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위 법률 제39조)을 보아도 알 수 있다[21].

현행법 시스템에서는 언론피해구제가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로 구제되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에는 기관 본질적인 권한 속성에 의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 기사의 수정과 삭제를 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7] 언론중재법에 의한 잊혀질 권리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상으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 반론,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만이 조정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제18조). 따라서 현행 언론중재법상으로는 최초보도 시점에서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나 반론보도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새삼스레 책임을 물을 대상으로 변한다고[30] 말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시한을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사실에 어긋난 보도일지라도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17조도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에 대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 기간 제한규정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기간에도 적용된다. 언론중재 신청기간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여러 해가 지난 과거 기사의 수정·삭제 요구는 언론중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7] 따라서 언론중재 제도를 통한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 청구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연적이다.

잊혀질 권리는 과거의 사실과 다른 기사뿐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사유로 하여 망각(oblivion)될 때가 되었음을 주장하여[28] 과거 기사의 삭제(erasure)를 요구할 수 있음을 권리의 핵심요체로 한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보도에 한해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과거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묻지 않고 언론중재 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으로 삼도록 언론중재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사 작성당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 해당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할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역시 언론중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잊혀질 권리에 기한 기사 삭제 요구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으로 할 때 조정에 의한 합의(현행법 제23조), 직권조정결정(현행법 제22조 참조)의 주문으로는 삭제, 정정, 반론, 추후보도 뿐 아니라, 해당 기사 내용을 검색엔진 웹페이지의 하단으로 밀려 나도록 하는 조치나[6] 신청인 이름을 익명처리하기,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14]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망각이 허용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

를 주장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고충이 따른다.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잊혀질 권리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사적 단체로서의 미디어가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누리는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할 공익적 가치를 지닌 자유이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느 쪽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는 비교가 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표현의 자유가 잊혀질 권리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각각의 이익을 형량할 기준을 세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준으로는 해당 기사가 갖는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 기사 작성의 목적, 해당 게시물의 창작성, 문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공적인 인물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행 언론중재법상으로는 조정대상으로 잊혀질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정 및 반론 또는 추후 등의 보도 청구권 행사 기간을 지나치게 3개월 내지 6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있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조속히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잊혀질 권리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청구기간도 대폭 연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거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 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기간의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언론을 중심으로 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국내외 관련법을 검토하여 그 대안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언론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 현장 연구가 배제되어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국과 EU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우리나라의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간의 견해들이 논의되어 한국의 관련법 해석분야의 논의나 법의 제·개정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철학적 관심 및 미디어 분야의 관심이 확산되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개인의 피해 구제 논의가 더욱 확대되어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onlinenews team, Google, price war of cloud begins, a sharp cut in drive using price, http://ebuzz.etnews.com /news/news1/2930721_5007.html, 2012

[2] Myeong-Sin Hong, An attempt to weldying of information:international tendenc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Press Arbitration, Summer, pp.20-31, 2011.

[3] Mayer-Schönberger, Viktor,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2009

[4] Karen Majovski, Data Expiration, Let the User Decide:Proposed Legislation for Online User-Generated content, University of San Fransisco Law Review(47 USFLR 807), 2013

[5] Jeffrey Rosen,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nford Law Review Online(64 Stan. L. Rev. Online 88), 2012

[6] Dae-Heon Bae, Lost Social Reputat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honnam Law Review, Vol.32, No.3, pp.119-149, 2012.

[7] Jae-Jin Lee, Bon-Kwon Gu, Toward the Proper Resolution of the Problems Caused by Unerasable Old News Articles on the Interne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22, No.3, pp.172-212, 2008.

[8] Bon-Kwon Gu, Circulation of old news and damage cases, Press Arbitration, Vol.31, No.2, pp.7-19, 2011.

[9] Moon-Jeong Kim, Digital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Journal of philosophy, Vol.72, No.3, pp.321-339, 2013.

[10] Laurent Checola, "Droit à l'oubli" sur Internet : une charte signée sans Google ni Facebook, http://www.lemonde.fr/technologies/article/2010/10/13/droit-a-l-oubli-sur-internet-une-charte-signee-sans-google-ni-facebook_1425667_651865.html, 2010.

[11] Suzanne Daley"On Its Own, Europe Backs Web Privacy Fights." New York Times, Aug. 9, 2011. http://www.nytimes.com/2011/08/10/world/europe/10spain.html.

[12] Seongwoo Ji,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the views of the theory of the basic human rights, Press arbitration, Vol.31, No.2, pp.32-47, 2011.

[13] Steven C.,Benntt, Right to Be Forgotten: Reconciling EU and US Perspectives, Berkel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2

[14] Ambrose, Meg Leta, It's About Time: Privacy, Information Life Cycles,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winter, 2013

[15] Kiyoshi Murata, Yohko Orito, The right to forget/be forgotten, Ethics in Interdisciplinary and Intercultural Relations, 192, CEPE 2011

[16] Taeeon Koo, Various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Law review, Vol.3, pp.89-90. 2012

[17] Eun-Jung Jun Heung-Youl Youm,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EU law focusing on the comparison, Korea-Germany Social science review, Vol.22, No.3, pp.239-268, 2012.

[18] Sung Gi Hwang, Harmoniza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Other Constitutional Values,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Vol.5, No.2, pp.20-36, 2012.

[19] Un-Byeo Go, Gwang-Hee Choi, Jae-Il Lee, Difference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between Eu and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30, No.10, pp.34-41, 2012.

[20] Kyeonjin Choi, Junhyun Jung, Taeun Gu, Sungwoo Ji, Doseung Kim, Junho Sung, Study on the measures for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12

[21] Jaewan Moon, The Korean Way of Balancing Two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Know, Press and Law, Vol.10, No.2, pp.1-37, 2011.

[22] Judicial reports, Constitutional court, Vol.17, No.1, p.691, 2005.

[23] Jasmine. Mcnealy, The Emerging Conflict Between Newsworthiness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Northern Kentucky Law Review, 2012.

[24] Samuel Warren,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Boston, December, 1890.

[25] Young Hoa Ju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the Information Privacyin Constitutional Law,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39, pp.567-598, 2012.

[26] Simon Castellano, Th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European law: a constitutional debate. 16 Lex Electronica, 2012

[27] EU. Proposal for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n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60_en.htm

[28] Meg Leta Ambrose, Jef. Ausloos, The Right to be Forgotten Across the Pond. Journal of Information Policy 3, Available at SSRN 2032325, 2013.

[29] In-Sun Ham, A study on the legal system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Justice, Vol.133, pp.5-38, 2012.

[30] Chunyeol Ryu, Byunghye Lee, Jaejin Lee, Proposal for the competitive society, Hansun foundation, 2009.

[31]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t art 4(2),

Rosen, Jeffrey. at 91. FN) 15

[32] Minyeong Lee, Myungsik Kim, Sukhan Hong, Hanju Lee, Report of the overseas 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12

홍 숙 영(Hong, Sook-Yeong)

- 1992년 2월 : 이화여대 경제학과 (학사)
- 2007년 2월 : 프랑스국립파리2대학 학교 언론대학원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미디어콘텐츠, 언론법
- E-Mail : marylou@naver.com